

낙농업의 실상과 장기발전 전략방안 ③

김 경 래
본회 정책기획부장

〈지난호에 이어서〉

9. 수급관리 제도와 정책 - 그러나 '판도라' 상자에 남은 것

본고에서 모두 다루지 않았지만 본고외에도 낙농산업의 실상을 보게 하는 사항들은 숫하다. 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화, 사료유통제도 개선등도 제대로 보아야 할 사항들이다. 무슨 나라가 축산농가를 농민의 범주에 넣지 않고 그리하여 비료에 대하여 부가세를 물도록 하는 이상스러운 일하나 개운하게 해결 못하는지 모를 일이다.

잘못되거나 가당찮은 일은 쉽게 판치고 좋은 일은 해결되지 않거나 오랜 세월이 걸려야 한다. 눈앞의 이익, 사사로운 이익은 소중하게 여겨지지만 먼 미래의 이익, 다수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일, 전체의 공동이익 추구는 멀기만 하다.

그리스 신화에서 헤파이스토스는 인류최초의 여자 판도라를 만들었다. 판도라는 생명을 부여받고 에피메테우스의 아내가 된다. 그리고 지상으로 내려 온다. 그런데 절대 열지 말 것을 어기고 금단의 상자를 연다. 그러자 안에서 온갖 죄악과 절망을 부르는 탐욕,

중상, 허영 등이 튀어나와 세상에 넘치게 되고 만다. 그 상자의 바닥에 신음하며 마지막 남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것이었다.

낙농업의 실상이라는 것이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놓은 것과 같다. 준비도 갖추지 못한 채 판을 벌린 수입개방정책이 그러하며, 불안한 수급사정이 그러하며, 산업발전을 역류하는 유통현실이 그러하며, 납득할 수 없이 농가에 불이익한 생산비 보상제도가 그러하며, 행복한 낙농을 영위할 수 없는 이상한 규제들이 그러하며, 그림의 떡인 제도자금이 그러하며, 불합리한 세제가 그러하며, 사료원곡에 대한 독점적 구조를 보장해 주는 제도가 그러하며, 낙농가에 빌붙어 폭리를 일삼는 사기꾼의 무리들이 또한 그러하다.

그리스 신화에서 헤파이스토스는 인류최초의 여자 판도라를 만들었다. 판도라는 생명을 부여받고 에피메테우스의 아내가 된다. 그리고 지상으로 내려 온다. 그런데 절대 열지 말 것을 어기고 금단의 상자를 연다. 그러자 안에서 온갖 죄악과 절망을 부르는 탐욕, 중상, 허영 등이 튀어나와 세상에 넘치게 되고 만다. 그 상자의 바닥에 신음하며 마지막 남은 것이 있었

니 바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상자이었다.

그러나 판도라의 상자에 희망이라는 것이 남아 있었듯이, 그리하여 아무리 시련이 크고 약탈과 박해가 판을 칠지라도 그래도 인류는 발전으로 전진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낙농산업에 있어 판도라의 상자에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일런가. 그것은 바로 이른 바 최소한 갖추어야 할 낙농제도를 위한 「낙농진흥법」의 개정이다.

한심스럽게도 지난 10여년 동안 추구해온 범개정이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음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뽑은 우리의 선량들이 문제의 핵심,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 안타깝기 짝이 없다.(그렇지라도 우리 낙농가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남아 있더라도 하다면 선량들의 결정 또한 판도라의 상자에서 먼저 튀어나온 것 중의 하나라고 여기자)

이제 새삼 낙농제도가 낙농가의 보호와 산업발전을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한 사유-법 개정의 이유를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범개정안은 배경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있음을 알고 넘어가자.

첫째, 현행법은 생산기반이 취약하던 초창기(1967)에 제정한 법률이므로 변화한 시대에는 운용될 수 없는 법이었다(일본은 1954년 제정 이후 약 30년 동안 두번 개정하였음).

둘째, 기초식량 확보원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셋째, 유제품 시장개방 시대에 국내산업과 낙농가에 대한 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할 시대적 요구가 있게 되었다.

네째, 낙농문제의 핵심을 이루는 수급, 가격, 유통체계를 민간 주도로 바꾸고 정부개입을 최소화하여 자강력을 갖추어 가야만 한다.

다섯째, 국가의 정책과 수급제도를 잇는 고리를 발전적인 것으로 확정해야만 한다.

초창기에 비하여 낙농의 여건이 크게 변화하였다. 범제정 당시(1967)보다 젖소사육농가수는 15.4배, 젖소사육두수는 51.0배 그리고 원유생산량은 무려 91배가 늘어났다. 이런 품새에 과거의 옷 그대로 간다

는 것은 산업발전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나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측면 또는 사회구성 요소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조차 걸맞지 않는 일임에 틀림 없는 것이다.

특히 수급, 유통, 가격체계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늘이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문제를 타결하는 방안의 설정은 다른 모든 불리한 여건을 인내한다고 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점에 관하여 법률개정으로 추구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무엇이며 정책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는 다음의 <그림1>에서와 같이 요약하여 볼 수 있다.

우선 물류의 흐름은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집유조합이 검사, 집유하여 유업체로 인도하며, 유업체에서 공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집유비용을 포함한 원유대가 집유조합과 낙농진흥회로 이전된다. 전국낙농가에 대한 원유대 계산은 낙농진흥회에서 맡으며 실원유대는 집유조합에서 농가에 지불한다. 집유조합에서 발생한 집유비용은 낙농진흥회가 지불한다. 따라서 이 거래는 낙농진흥회가 낙농가와 유업체 사이에서 집유조합으로 하여금 위탁집유, 수송케하는 것이며, 동시에 원유를 수탁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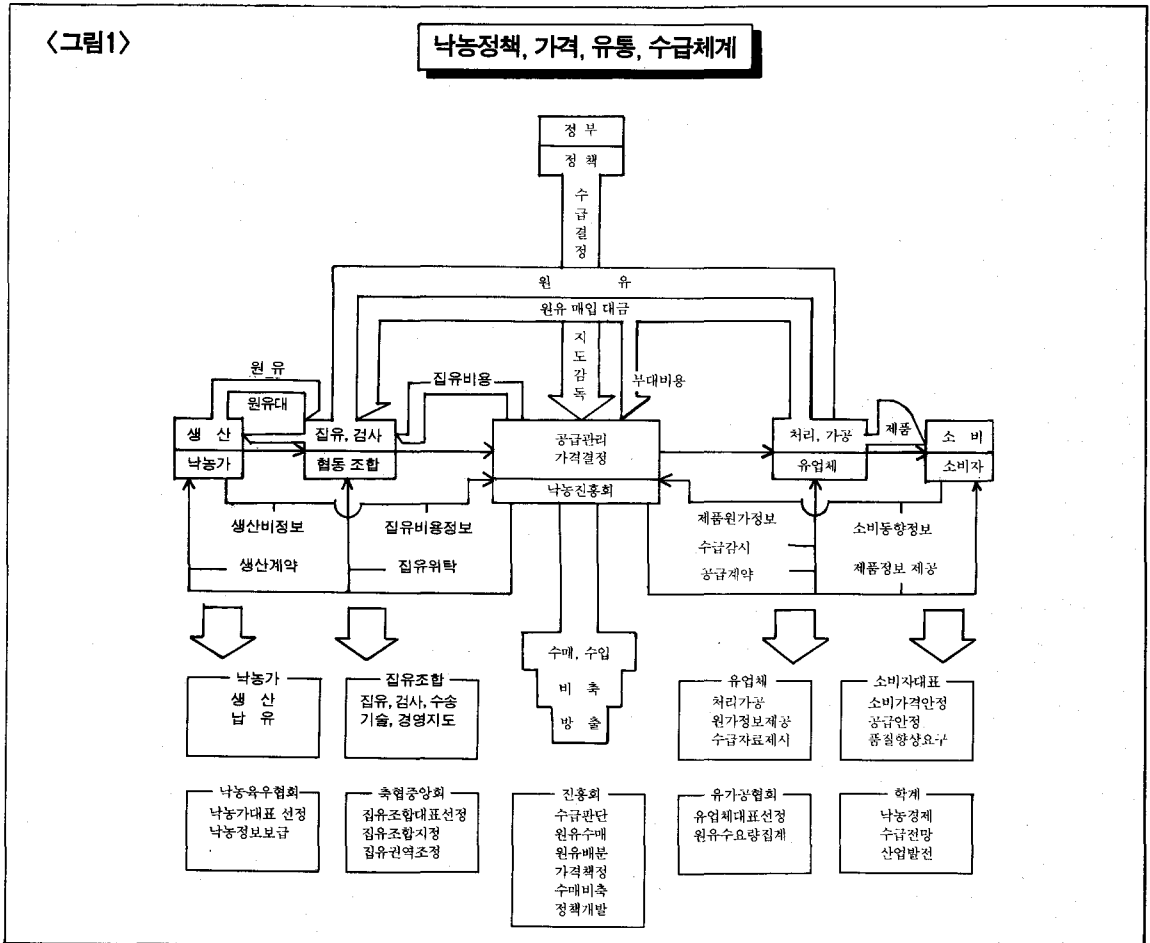
거래가격의 결정은 낙농가의 생산비, 집유조합의 집유비용, 공급관리비용, 유업체의 유제품생산원가, 소비동향 및 전망등을 고려하여 낙농진흥회가 결정한다.

원유수급과정에서 전국적인 수급판단은 진흥회가 맡게되나 그 수급결정은 정책으로서 정부가 맡는다. 낙농진흥회는 수급결정과 관련하여 원유잉여시에는 제품을 매입 비축하고, 원유부족시에는 매입 비축유 제품을 방출하거나 유제품을 수입, 유업체에 공급하여 국내 수급가격 안정을 이룬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정책을 실행하고 아울러 낙농진흥회가 행하는 공급관리, 가격결정, 수매와 비축, 수입과 방출등의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이 제도하에서 정보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즉, 낙농가의 원유생산비와 생산량정보, 집유조합의 집유비용의 정보, 유업체의 제품생산원가 및 원유소요량정

〈그림1〉

낙농정책, 가격, 유통, 공급체계



보, 소비자의 동향이나 소득변화의 정보 등 낙농생산, 처리가공, 소비, 가격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낙농진흥회로 집중되며, 아울러 누구에게나 공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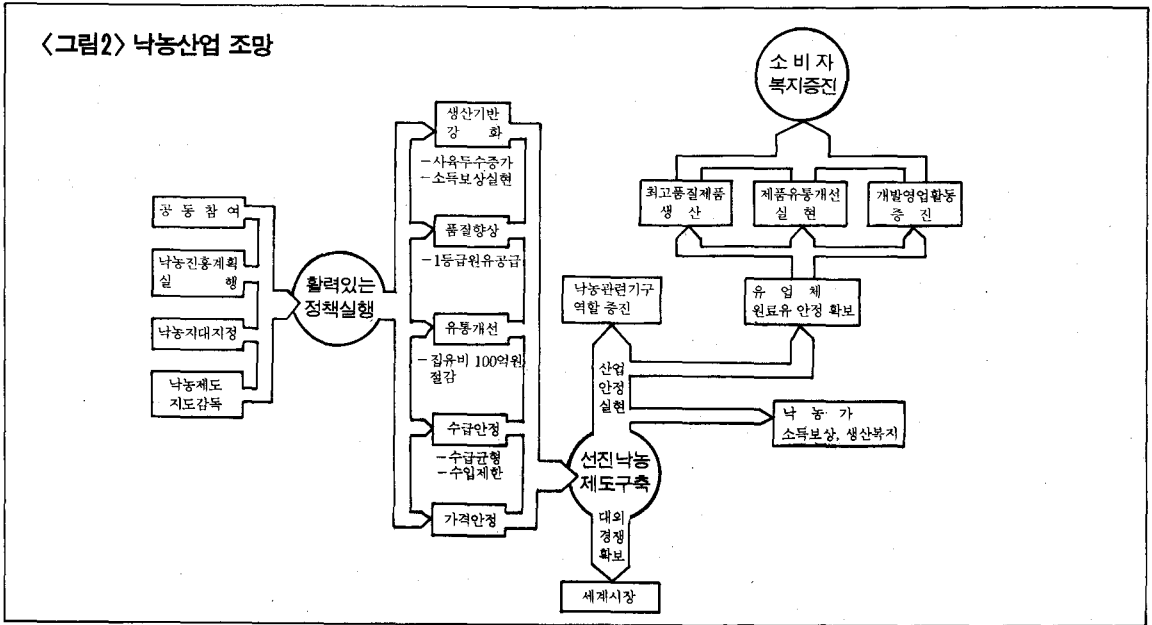
공급관리, 가격결정 기구인 낙농진흥회와 낙농의 직접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구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될 수 있다. 즉, 낙농가와 원유생산 및 수매계약의 관계를, 집유조합과는 위탁집유의 관계를 유업체와는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계약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아울러 직접적인 관계를 규약하는 것은 대의기구의 역할이 된다. 이는 〈그림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들 기구중 낙농육우협회, 축협중앙회, 유가공협회는 낙농진흥회의 총회를 구성하는 주체가 될 것이며, 낙농진흥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사회에는

상기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및 소비자기구 대표와 학계대표가 추가될 것이다.

아무리 우리의 낙농여건이 개운치 못한 것이라 할 지라도 최소한 상기한 바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도록 제도가 갖추어진다면 새로운 제도하에서 낙농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점에 대하여 조망을 해보는 것은 낙농에 대하여 희망을 걸어도 좋으나 아니면 절망적이니까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등의 판단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산업에 대하여 조망할 수 없다면 제도자체를 바꾸는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으리라. 우선 크게 조망할 수 있는 것은 〈그림2〉에서의

〈그림2〉 낙농산업 조망



같이 세가지로 볼 수 있다. 물론 그 세가지가 진행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최종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과정이나 결과냐는 큰 문제가 아니다. 어떠한 결과라도 새로운 것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어떠한 진행과정이라도 그것은 앞의 과정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먼저 낙농산업은 정책의 발전과 제도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낙농당사자와 단체의 공동참여, 정부의 낙농진흥계획의 실행, 낙농지대의 구분과 지정, 낙농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도역할의 증대 등이 맞물려 정책자체를 활력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활력있는 정책실행을 바탕으로 하여 생산기반의 강화, 원유품질의 향상, 원유유통의 개선, 수급의 안정, 가격체계의 개선과 안정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우리의 낙농산업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선진낙농제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낙농가는 정당한 가격보장과 동시에 생산복지 증진의 기초위에 서게 될 것이며, 낙농관련 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다방면으로 발전될 수 있음에 틀림없다. 유업체는 원료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좋은 원유에 의한 더욱 좋은 제품의 생

산, 개발과 영업활동의 활성화, 합당한 경쟁과 제품유통의 개선 등에 주력하는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 복지증진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낙농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외국산 유제품의 수입제한 등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것도 「낙농진흥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10. 낙농산업 - 시장방어 3단계 전략방안

이제까지 종래에 별로 거론되지 않았던 일을 중심으로 낙농산업의 실상을 살펴보았다. 이제 발전에 대하여 그리고 그 전략방안을 거론할 때이다.

아름다운 나비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알에서, 유충으로, 벌레로, 번데기로 그리고 나비로, 이 단계를 밟아야 한다. 이를 발전이라 한다. 낙농산업의 발전도 마찬가지이다. 구태를 계속하는 한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 알을 깨고 나오는 시련없이 댓가를 요구할 수 없다.

발전(development)이란 말은 라틴어인 dis(거꾸로)+Veloper(감는다, 쌓는다)에서 나온 것이다. 따

라서 이 개념에는 「감아 있는 것을 푼」 것처럼, 이전에 존재하였던 것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이 들어 있다. 발전은 기대되는 미래가 서서히 나타나는 과정을 뜻한다. 발전은 방해받을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만은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전략도 마찬가지이다. 전략의 개념에는 발전이라는 과정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깔려있다. 전략은 정책 또는 운영을 위하여 설정된 목표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위에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다. 실천을 전제하지 않은 전략은 그림일 뿐이지 전략이라는 개념을 부여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제안에서 제시하는 것은 전략자체가 아니라 전략방안이 될 수 밖에 없다. 만약 정책이 이러한 것들을 채택하고 실행한다면 그때에는 이 제안이 전략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전략은 현상타개를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전략은 실행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위상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로 지닌다. 만약 우리가 향후 몇년내에 달나라를 정복하고 식민지를 건설한다는 전략을 짜 맞추었다면 그것은 허무맹랑한 소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행동의 연장선장에서 전략은 제가치를 지니고 존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들을 전제로 구체적 실행대안(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공격형과 방어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낙농산업을 세계 시장을 향하여 경쟁산업으로 가꾸려 한다면 그것은 공격형전략의 수립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국내 소비시장에 대한 충분한 공급량의 확보와 수요의 지속적인 증진을 도모하되 외국산 유제품의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 수급안정을 확보하려 한다면 그것은 방어형 전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방어형 전략일지라도 그 개념속에는 공격형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 수세만으로는 완벽 방어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방어의 의미가 공격형에서 찾을 수도 있게 된다.

아울러 우리의 낙농산업이 정책으로서나 제도로서나 제대로 자리잡아 간다면 소극적 방어보다는 적극

적 전략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해 국내의 과잉을 처리하기 위하여는 필요에 따라서는 수출까지도 실행하는 공격형 전략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역시 국가의 낙농산업에 대한 기본목표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른다. 만약 정책이 낙농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표면상 나타난 사실만 가지고 볼 때 국제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될지라도 **최소한 다음을 기본목표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 1) 2000년대에 국내 수요에 대하여 우리 상품을 85%이상 공급한다.
- 2) 정책의 뒷받침을 낙농가와 경쟁력을 국제 수준화하는데 둔다.

이러한 목표의 성취는 자금과 경쟁력 강화를 주안점으로 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수반하여야 하며, 아울러 낙농산업의 생산, 유통, 소비등에 관련된 제반 시스템이 통합관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그 통합관장이라는 것이 민간 자율을 규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메카니즘이어야 한다.

당면한 시장개방의 여건하에서 낙농산업의 전략을 구상하기 위하여 전략요인과 관련 정책을 구분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이다.

(표1) 전략설정 요인과 정책의 연관

요 인	전략구분	주요 정책
가 격 과 생 산 력	생산기반	세계, 금융, 증산보조, 가축개량, 설비투자, 축산구조개선정책, 국내조지자원 정책
품 질	생산기반	유질가격차등제, 낙농진흥법의 개정시행 전국단위 낙농연구, 경영 기술지도 시스템 구축
일 반 수 요 창 출	시장기반	자조금제도, 공동홍보, 공동연구와 개발 제품의 유통개선
거 래 조 건	시장기반	비관세장벽, 검역의 강화, 협동조합 정책 발전, 시장구조제편, 공동홍보증진
정부보조와 교역조건	교역기반	보육관세, 축산구조개선정책의 조정 낙농진흥법의 활용

상기에서 구분한 것을 다시 전략화를 위하여 재정리하여 보면 우리의 낙농산업 생존 전략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요약될 수 있다.

최초, 무역협상으로 대응한다.

다음, 생산기반 강화로 대응한다.

최종, 시장역할 조성으로 대응한다.

지금까지 논급하고 풀어온 내용들은 상기 3단계와 세부적으로 어떻게 연계되는 것일까? 그 내용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인가? 이들을 약속의 형태로 개진하여 본다.

낙농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 전략

가. 최초, 무역협상으로 대응

1) 국민 기초식량으로 낙농제품 보호에 대한 정부 의지 확보

- 낙농제품, 그룹별, 단계별 개방
- NTC 품목 지정(최종 보호품목 지정)

2) 낙농제품의 선별적 수입제한 확대 및 자급수준 결정

· 국내 낙농산업에 영향을 적게주는 품목 수입확대로 수입 개방압력 완화

· 낙농제품의 자급수준을 결정하고 일정수준의 수량을 수입하여 주기적이고 구조적인 수입불균형 해소로 낙농생산기반 위축 방지

3) 수입제한 근거 확보

- 가공원료유 시장 : 정부 수량 제한
- 시유 : 자유시장
- 낙농진흥법 개정(안) 시행령에 명시

4) 낙농제품을 국가무역 품목지정

· GATT 제11조 제2항(c)(1)을 원용
· 동종상품(Like Product)의 요건으로 가역성과 동일성분(수입제한 실시하고 있는 제품)의 개념을 추가할 것을 주장(일본의 주장과 같음)

5) 유제품 및 유사 유제품 국제통일 상품 분류(HS)의 조정

· 시유의 경우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유와 멸균유의 세분(HS분류 4단위에서 8단위로)

6) 수출국의 국내보조 유지시 상계관세, 수입과징금, 덤핑제소 조치 활용

· 국내가격 수준과 동등한 가격이 되도록 상계관세 부과

· 국내 낙농산업 보호를 위하여 수입과징금 부과등으로 국내여건 조정

나. 다음, 생산기반 강화로 대응

1) 낙농경영 여건의 국제경쟁 수준화
가) 사료 및 축산기자재 및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나) 사료곡물유통의 자율화

다) 축산구조개선 정책의 조정

라) 시설개선 투자유자(장기저리)의 확대

마) 국내 산지자원의 활용도 증대를 위한 조치

2) 한육우 산업의 통합 정책 추진

가) 한육우 관련 모든 정책의 통합

나) 한육우 농가의 조직화

다) 한육우협동조합 설립의 허용 및 역할 증대

3) 낙농력 재창조를 위한 국가적 시스템의 구축

가) 생산복지의 시각에서 전국단위의 낙농휴식일제 운영

나) 일부 협동조합의 헬퍼제도 발전 확산

다) 정부가 주도하는 낙농전문인력의 양성

4) 수급안정, 수매비축제도의 보장책 강구

가) 낙농제품의 수매비축제도의 시행

나) 완충재고에 대한 정부재정의 확대

5) 낙농진흥법의 개정과 제도의 조기정착

가) 낙농진흥법의 조속한 개정처리와 제도의 최단기간내 정착

나) 낙농발전 정책 추진 시스템의 통합과 낙농중앙연구소 설치

다) 해외 낙농정보의 입수 및 활용 증대

6) 원유 품질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가) 유질 가격차등제 방안의 설정과 교육확대

나) 원유검사의 공영제도 연구발전

다) 전국적인 경영, 기술지도 통합시스템의 구축

다. 최종, 시장역할조성으로 대응

1) 국내 낙농제품의 일반 수요창출과 시장 방어

- 자조금제도의 일대개혁

가) 농발법시행령의 개정

나) 신설되는 낙농진흥사업회가 일반 수요창출의 역할을 주도수행

다) 낙농가, 유업체, 축협중앙회 공동참여

라) 일반 수요창출 비용조성 규모

낙농가 : 20억원(원유 1kg당 1원) -
 자조금제도
 유업체 : 20억원(매출액의 0.1%) -
 공동홍보비
 정 부 : 20억원 - 단체조성액의 50%이내 -
 농발기금보조

합 계 : 60억원

2) 낙농업협동조합의 시장기능 확대와 시장재편
 가) 유통비용의 획기적인 감축(선진국 수준화)

나) 전국시장의 조정과 협동조합의 시장참여 확대 및 역할 증대

3) 차별화 및 시장조정 기능의 확대

가) 유통비용 절감에 의한 대응 확대

나) 국내 고유의 상품표시에 의한 외산낙농제품 및 취급기피 품조 조성

다) 전국단위 홍보통합 및 증대

라) 검역제도의 강화

다음으로 상기의 전략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 역할을 재확인하고 각자가 어떤 임무를 실행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우선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거론된 제도들을 개선, 조정해야 한다. 특히 낙농진흥법을 조속히 개정하여야 하며, 아울러 법개정에 의하여 바뀌는 제도들이 시행착오없이 자리잡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무역이나 시장개방에 대하여 추호의 두려움도 없이 대응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낙농가와 생산자 단체는 양질의 원유를 생산하여 소비자에 제공하고, 시설장비의 개선을 포함하여 젖소의 개량 등 생산성의 향상과 생산력의 증진에 몰두하여야 한다. 아울러 스스로가 생산한 우유의 소비촉진, 다른 나라 상품과의 경쟁력 제고, 원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조금제도에 예외없이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이 낙농가의 뜻에 반하거나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결속력을 키워야 한다.

유업체와 유가공단체는 신상품의 확대개발로 신수요의 창출과 동시에 외산제품과 맞대결에서 패배하지

않은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에 과다한 부담을 지게하는 유통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비용의 감축을 기하여야 한다. 물론 우리 우유와 유제품의 소비확대를 위한 공동홍보에 예외없이 참여하여야 한다.

낙농업협동조합은 우유소비촉진에 직접참여하고, 낙협 자신들이 시장기능(상품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유통을 주도하여야 한다. 소비시장의 지역화라는 과제해결을 주도해야 하며, 이러한 시장재편 활동에 의하여 유통단계를 줄이고 불합리하게 발생하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요약과 결론 -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낙농산업에 대한 실상을 보는 것은 총론적인 해결을 제안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체화 될 수 있는 방안의 맥을 잡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지금까지의 요소들을 요약해보면

가. 낙농산업은 식량문제에 있어 인간과 경합하는 관계가 아니며, 국가비상시에 더욱 필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식량자급이라는 국가전략의 주력부문으로 다루어 질 대상이다.

나. 선진국이 낙농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은 낙농산업을 선진, 강대, 문명국의 존립의 기본조건으로 삼기 때문이다.

다. 우리의 낙농산업은 정책의 기본만 확고하다면 「선진국과 같은 보조금」이 없을 때에도 시장방어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라. 낙농산업의 이해 당사자인 정부, 농가, 생산자 단체, 유업체는 낙농에 대한 인식을 일대 전환(세계의 일원, 21세기의 비전)해야 하며, 미래에 발생 가능한 자원국수주의에 대비하여야 한다.

마. 가장 근접된 소비의 전망과 그에 상응하는 국내 공급능력의 확보는 낙농산업에 대한 장기 전략의 주안점이어야 한다.

바. 수입개방에 대비한 시장방어 및 경쟁력 강화전략은 교역(무역), 생산(소득과 생산복지), 시장(유통 및 거래기반)등 3단계 대응으로 분리하여 수립할

수 있다.

사. 정부는 낙농에 관한 자급지라는 기본목표 설정, 생산에 있어서의 대응여건 강구, 통합적이며 일관된 정책수행 수단의 장치 등에 주력하여야 한다 등이 될 것이다.

상기 요소들을 정책의 골간으로 하여 정부에 대하여

가. 낙농장기전략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점진적으로 수용할 것과

첫째, 기본목표로서 2001년대에도 85%이상의 자급율을 확고히 지킨다.

둘째, 생산기반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갖는다.

세째, 낙농산업의 발전에 관한 통합적이며, 일관된 정책수행의 수단을 최단시일 내에 만든다.

나. 낙농산업의 시장방어 및 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다음을 기본전략으로 삼을 것과

첫째, 교역협상으로 대응한다.

둘째, 생산기반 강화로 대응한다.

셋째, 시장역할 조성으로 대응한다.

다. 전항의 기본전략을 실제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13대 실행과제를 정책의 골격으로 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1) 낙농제품 수출국이 보조금(생산자 및 수출보조금)을 유지하면 상계관세, 수입과징금부과, 덤핑제소 등으로 대응한다.

2)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축산구조개선 정책은 축산부문이 지니는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가치에 합당하도록 대우하고, 개방시기 이전에 대부분 완료되도록 하며, 아울러 농민의 부담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일대 조정한다.

3) 사료 및 축산기자재의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하고, 관세는 면세한다. 아울러 민간화, 자율화에 위배하여 독점적 거래를 인정하는 사료곡물 유통을 자유화한다.

4) 낙농산업의 국가적 조직화를 위하여 입지조건별 낙농지대의 설정, 낙농기술체계의 정립, 지역낙농협동조합의 유치리시설의 운영 지원 등 종합적인 낙농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5) 국가적 생산력의 증진과 농가의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젖소의 개량을 가속화하고 아울러 입지조건별 규모별 표준축사시설모형을 확대개발하여 시설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농가에 제공한다.

6) 국내 원유의 품질과 위생의 수준이 선진국에 이르도록 전국단위의 낙농기술, 경영지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적인 농가교육과 아울러 원유의 가격제도를 최단시일내에 개선 정착시킨다.

7) 낙농제도 금융과 보조사업은 정책목표의 달성, 자금효율의 극대화, 농가편익의 증대, 행정의 간소화 등을 고려하여 운영제도를 중앙단위관장에서 지역단위로 조정하고 관리제도를 일대 혁신한다.

8) 한육우산업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에서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최단시일내에 생산과 유통이 농민의 손에 관장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한우협동조합 설립을 허용하고 이를 적극 육성한다.

9) 낙농력의 재창조와 생산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단위의 체계화된 낙농휴식일제를 운영토록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확대 발전시킨다.

10) 낙농진흥법을 신속히 개정토록 하고 아울러 제도운영의 실체를 이루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단시일내에 준비한다.

11) 낙농정책 제도의 발전, 국내외 낙농정보의 입수와 신속한 활용, 전국단위의 낙농경영, 기술의 지도 등을 위하여 민간과 정부가 투자하는 「(가칭) 낙농중앙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검토한다.

12) 국내 낙농품의 성장 영양학적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시장개방 대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낙농부문의 자조금제도가 실행될 수 있도록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관련제도를 민주적 총력체제를 갖추도록 개혁한다.

13) 낙농제품의 국내유통의 일대 개혁으로 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시장참여 확대 및 역할의 증진, 민간자율적인 시장구조의 재편 등을 조성한다.